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시행 2026.6.1., 학교법인 동은학원 법인행정팀-2026-184(2026.5.21.)

학생지원팀, 041-530-1385

제1장 총칙 [장신설 2025.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부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5.3.1.>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업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9.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3.1.>]

제2장 장학위원회 [장신설 2025.3.1.]

제4조(장학위원회의 구성)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심의기구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장학위원회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3.1.>]

제3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리 [장신설 2025.3.1.]

제5조(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부 신입생(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 및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단,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별도로 정한다)
2. 국가 또는 본 대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
3. 본 대학교(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부속병원, 동하산업(주), 동은정보기술(주) 임직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전담교원 포함, 계약직 제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개정 2006.3.1., 2012.3.1., 2013.9.1., 2016.3.1., 2019.7.1., 2020.7.1., 2025.3.1.>
4. 본 대학교(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부속병원, 동하산업(주), 동은정보기술(주) 임직원 포함) 재직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중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개정 2006.3.1., 2016.3.1., 2019.7.1., 2025.3.1.>
5. 본 대학교의 정년 또는 명예퇴직 직원의 직계자녀 중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개정 2016.3.1.>
6.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계약직원 <개정 2016.3.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나 그 밖의 보훈 관련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 손자녀 <개정 2016.3.1.,

6-4-48-2 장학금 지급 규정

2020.7.1.>

8. 학생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개정 2012.3.1., 2016.3.1.>
9.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일정기간 근로하는 자 <개정 2012.3.1., 2016.3.1.>
10. 체육 특기자 <개정 2016.3.1.>
11. 타학생에게 모범이 될 행동을 하였거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신설 2007.3.1., 2012.3.1., 2016.3.1.>
12. 교·내외 외국어 능력시험 및 각종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개정 2016.3.1.>
13.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 농어촌 출신자, 수해, 재해 등으로 인한 가계곤란 자 <신설 2012.3.1., 2016.3.1.>
14.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협약대상자 <신설 2014.3.1., 2016.3.1.>
15. 「순천향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졸업연장(유예)자 포함) 중 이수한 자유학기제 수를 제외하고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단,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은 한국어교육원에서 이수한 학기는 이수학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3.1., 2018.9.1., 2022.9.1., 2025.3.1.>
1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6.3.1., 2020.7.1.>

제6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재원 및 유형에 의해 구분되며 재원은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유형은 학비감면성(등록금성) 장학금 및 생활비성 장학금이 있다.

- ② 교내장학금은 교비에 의해 편성된 장학금을 말한다. (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와의 협약과 관련된 장학금의 대응자금으로 적용되는 장학금 포함)
- ③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 개인 기부자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된 장학금을 말한다.
- ④ 장학금은 학비감면성(등록금성) 장학금과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1. 학비감면성(등록금성) 장학금은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생활비성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을 말하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생활비성 장학금은 수업료 이외 학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고, 수업연한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3.1.]

[전문개정 2019.7.1., 2025.3.1.]

제7조(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① 교내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별표1]에 따라 지급하고, 공통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2.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으로 한다.
3. 성적우수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은 이수과목 전체가 PASS/FAIL로 평가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인해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성적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한다.
4.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장학금은 상실된다.
5.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자유학기제로 등록한 경우 해당 장학금은 자유학기제를 이수 후 다음 학기로 이월 가능하다. 단, 장학금이 이월된 일반학기에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한 경우 장학금은 상실된다.

6. 장학생 선발 시 최저 취득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강신청 학년/학기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외 학비감면성(등록금성) 장학금
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5년제는 4학년 2학기 까지	17학점 * 간호학과 15학점	12학점
4학년 1학기 * 5년제는 5학년 1학기	12학점	

※ 성적우수 장학금 외 학비감면성(등록금성) 장학금 중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생활비성 장학금은 학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7.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P/F평가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수강신청 학년-학기	P/F 평가과목 최대인정	예외 규정
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5년제는 4학년 2학기까지	6학점	P/F교과목이 교양필수, 학과기초, 전공필수 등의 졸업에 필수적인 교과목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최대인정학점 수를 초과하더라도 예외로 함
4학년 1학기 * 5년제는 5학년 1학기	4학점	

8. 장학금통계조사 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으로 한다.(단,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변경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9. 국고사업 등 사업기반 운영 학과의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이월이 가능하다. <신설 2025.9.1.>

②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 개인 기부자 등이 따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외장학생수의 단과대학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처장이 배정한다.
2. 교외장학금이 학교로 전입될 때에는 교비 처리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3. 목적성 발전기금 장학금 지정 장학생의 경우 성적 및 별도의 제한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5.3.1.]

[전문개정 2025.3.1.]

제7조의2(국가장학금) 삭제 <2025.3.1.>

제8조(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8.6.18>

제9조(신청자격의 제한)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3.1.]

제10조(수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1.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미등록 휴학자 <개정 2000.3.1., 2016.3.1., 2021.7.1., 2025.3.1.>
3. 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못하거나 아니한 자<개정 2025.3.1.>
4.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자

6-4-48-4 장학금 지급 규정

5. 삭제 <2014.2.28.>

6. 삭제 <2018.9.1.>

7. 2학기 이상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 중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장학금 대신 학비감면 성격의 타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기도 계속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9.7.1., 2020.7.1.>

8. 학칙 제6조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또는 졸업연장(유예)한 자(단, 자유학기제 이수로 인한 초과학기자의 경우 이수한 자유학기제 수만큼 제외하고 수업연한을 계산한다.) <신설 2025.3.1.>

9. 그 밖에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개정 2019.7.1., 2020.7.1., 2025.3.1.>

제11조(중복지원 인정범위) ① 학비감면 목적의 학비감면성(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비감면 목적의 장학금과 무관한 근로성, 대가성, 포상성, 생활비 장학금 및 현장실습, 인턴십, 해외연수 등의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9.1., 2011.9.1., 2012.3.1., 2013.9.1., 2014.3.1., 2018.9.1., 2020.7.1., 2025.3.1.>

② 삭제 <2014.2.28.>

제12조(장학금액)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별표1]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7.1., 2020.7.1., 2025.3.1.>

제12조의2(장학금 반환) ① 수혜받은 학비감면 목적의 학비감면성(등록금성)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한 장학금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

② 부득이한 사정(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또는 장학금 지급이후 자격미달이나 의무 미이행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본조신설 2018.9.1.]

제13조(장학금 수혜신청) ①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 2012.3.1., 2013.9.1., 2016.3.1., 2018.9.1.>

② 삭제 <2019.7.1.>

제14조(신청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소정양식) 1부

2. 장학생지원서(소정양식) 1부

제15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과장 및 학장이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 교체추천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5.3.1.>

1. 제10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0.7.1., 2025.3.1.>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개정 2025.3.1.>

3.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포기한 경우 <개정 2020.7.1., 2025.3.1.>

[전문개정 2019.7.1.]

제16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삭제(2012.3.1.)>

- ②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 시 장학금액 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지급한다. <개정 2012.3.1., 2013.9.1., 2025.3.1.>
- ③ 삭제 <2012.3.1.>
- ④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12.3.1., 2025.3.1.>
- ⑤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 개인 기부자 등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5.3.1.>

제17조(장학생 선발 동점자 처리)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 있어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9.7.1., 2020.7.1.>

1. 평균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실점총점이 높은 학생을 우선 한다. <개정 2019.7.1., 2025.3.1.>
2. 평균평점과 실점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최하위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한다. (최하위점수란 수강신청 과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의 과목을 비교 함) <개정 2019.7.1., 2025.3. .>
3. 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9.7.1., 2020.7.1., 2025.3.1.>
 - 가. 1학년 : 교양(필수, 선택) 학과기초과목 순으로 평균 평점이 높은 학생을 우선한다.
 - 나. 2,3,4,5학년 : 전공과목의 실점총점이 높은 학생을 우선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직전학기 실점총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9.7.1., 2020.7.1., 2025.3.1.>

제18조(대여장학금 상환에 따른 경과조치) 삭제<2012.3.1.>

제19조(장학사정관) ① 학생에게 장학과 관련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을 전담하는 장학사정관을 둔다. <신설 2012.3.1.>

- ② 장학사정관은 각 단과대학 교학부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3.1., 2018.9.1.>
- ③ 장학사정관은 경제적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급하게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018.9.1.>

제2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7.01.]

부 칙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6-4-48-6 장학금 지급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198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3.1.>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에 따른 [별표 1]의 6항 및 [별표 2]의 성적우수장학 1,2,3,5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4-48-8 장학금 지급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별표1]의 5항 교내장학생 선발 최저 취득학점 기준은 2021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25학년도 장학선발 대상자부터 적용하며, 성적우수장학 관련 규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학생

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장학유형																																							
성적 우수 장학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① 직전학기 신청학점을 전부 취득한 자로서 성적평균이 3.8이상이며 17학점 (단, 간호학과 15학점, 4학년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성적평균 3.8이상인 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등록인원 20%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 선발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학생이 타 장학금 전액수혜, 취득학점 부족 등의 사유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될 경우 등록인원 20%내에서 차 순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4학년 1학기(5년제 학과는 5학년 1학기)가 었 학기인 학생은 3학년(5년제 학과는 4학년)과 합산하여 선발한다. ⑤ 선발인원 산정 시, 학과 · 학년 · 학기별 등록인원에서 자유학기 이수자 및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제외하고 산정하며 등록인원에 따른 장학생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등록인원</th><th colspan="4">선발인원</th></tr> <tr> <th>최우수</th><th>우수</th><th>장려</th><th>격려</th></tr> </thead> <tbody> <tr> <td>1명 ~ 4명</td><td>0</td><td>0</td><td>0</td><td>0</td></tr> <tr> <td>5명 ~ 7명</td><td>0</td><td>1</td><td>0</td><td>0</td></tr> <tr> <td>8명 ~ 9명</td><td>1</td><td>0</td><td>0</td><td>0</td></tr> <tr> <td>10명 ~ 19명</td><td>1</td><td>1</td><td>0</td><td>0</td></tr> <tr> <td>20명 ~ 39명</td><td>1</td><td>1</td><td>1</td><td>0</td></tr> <tr> <td>40명 ~ 49명</td><td>1</td><td>1</td><td>1</td><td>1</td></tr> </tbody> </table> - 이후 등록인원 10명마다 격려, 장려, 우수, 최우수 순으로 1명씩 추가 선발 - 신설학과에 한하여 편제 완성년도까지는 등록인원 5명 미만이어도 우수 1명 선발 ⑥ 동점자 처리 기준 등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등록인원	선발인원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1명 ~ 4명	0	0	0	0	5명 ~ 7명	0	1	0	0	8명 ~ 9명	1	0	0	0	10명 ~ 19명	1	1	0	0	20명 ~ 39명	1	1	1	0	40명 ~ 49명	1	1	1	1	(최우수) 수업료 전액 (우수) 수업료 60% (장려) 수업료 40% (격려) 수업료 30%	학비감면
등록인원	선발인원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1명 ~ 4명	0	0	0	0																																							
5명 ~ 7명	0	1	0	0																																							
8명 ~ 9명	1	0	0	0																																							
10명 ~ 19명	1	1	0	0																																							
20명 ~ 39명	1	1	1	0																																							
40명 ~ 49명	1	1	1	1																																							
보훈 장학	보훈(본인)	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② 관련 법령에 의거 성적 및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학비감면																																							
	보훈(자녀)	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외손 포함) ② 관계 법령에 의거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 취득한 자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국가보조 50%)	학비감면																																							
체육특기장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여 체육특기자로 계속 활동중인 자(하키, 테니스) ② 체육특기자가 아닌 자로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비육성종목) - 성적 및 학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업료 전액	학비감면																																							
순천향복지장학		①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파악된 자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자 ②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대학자체계획을 따른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장학유형
단과대학특별장학		단과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은 단과대학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학성장학		① 본 대학교에 형제자매 2명 이상 재학해야 한다. - 3명 이상 재학일 때 2명 선발, 2명 재학일 때 1명 선발 ② 신청자의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수업료 50%	학비감면
장학사정관계장학		갑작스런 경제사정 어려움으로 인해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 중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생활비
교수협의회장학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성적 및 학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향실가족장학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①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전담트랙교원 포함, 계약직 제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② 법인, 산학협력단, 부속병원, 동하산업(주), 동은정보기술(주), 동은메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하메디칼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계약직 제외), 배우자 및 직계자녀 ③ 본 대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부속병원 임직원 포함) 재직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중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④ 본 대학교에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교직원의 직계자녀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학비감면
		① 본 대학교 '직원명예퇴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중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②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입학금 50% -수업료 50%	학비감면
		①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 ②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입학금 70% -수업료 70%	학비감면
계약학과장학		① 본 대학교 일반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자 ② 직전학기 성적 2.0이상(단,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수업료 30%	학비감면
		본 대학교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자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수업료 전액	학비감면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장학		① 본 대학교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② 직전학기 성적 2.0이상(단,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수업료 50%	학비감면
R.O.T.C.장학		학군후보생으로서의 활동 및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생활비
외국인 학생 장학	학부생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4.0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학비감면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3.5이상 4.0미만인 자	-생활관비 전액 -수업료 30%	생활비 학비감면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3.5미만인 자	-생활관비 전액 -수업료 25%	생활비 학비감면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3.0미만인 자	-생활관비 전액 -수업료 20%	생활비 학비감면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2.5미만인 자	생활관비 전액	생활비
		본 대학교 입학일 이후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4급 이상인 자	일정금액	생활비
		상기 장학금에 대한 대상자 선발 및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교환학생	외국인 학생 중 자비 교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생활비
봉사	리더십	① 학생회 및 자치단체 임원, 단과대학 임원, 학회장, 과대표, 대학 홍보대사,	일정금액	생활비

6-4-48-12 장학금 지급 규정

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장학유형
장학		언론사 국장 및 정기자, 정국원, 향설고시원 실장, 생활관총장으로 활동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②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사회봉사	지역사회봉사 및 해외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근로 장학	행정인턴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서 학생처장이 선발하여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자	일정금액	생활비
	인턴조교	교육단위 조교의 업무력 향상을 위하여 장학생 신분으로서 인턴조교 활동을 하는 자	일정금액	생활비
	특별근로	일시적 사유로 인해 단기간 근로 활동하는 자로서 학생처를 통해 선발	일정금액	생활비
	부서근로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일정시간 근로한 자로서 해당부서에서 선발하며 각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해당부서 예산으로 지급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현장실습 (인턴십)장학		국내·외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글로벌장학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해외연수, 해외리더십연수, 해외문화체험, GBS Study Abroad 등)에 참여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창업지원장학		본 대학교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학업역량장학		교내 각종 프로그램(캡스톤디자인, 멘토링, 튜터링, 마일리지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여 성과가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입상장학		교내 각종 공모전 및 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특별장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 ②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경제적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생활비
기금장학		독지가의 기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기탁자의 뜻에 따라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학생 중 해당학과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계절학기장학		하계/동계 계절학기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캡이어 자유학기제 장학		캡이어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에게 학비감면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수업료 전액	학비감면
졸업준비 지원 장학		초과학기자 중 '졸업종합지도' 교과목만을 수강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장학금을 지급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생활비
SCH 모범 우수 장학		학과활동에 공헌도가 높은 재학생으로 같은 학과 재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학과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Best Rookie 장학		신입생 중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적응 및 주도적인 대학생활을 위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일정금액	학비감면

■ 신·편입학생

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기간	장학유형
수능 성적 우수 장학 (향설 장학)	SMART	① 국어,수학,영어,탐구(2개 과목 평균)중 3개 과목 등급 합 5이내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지급기간 동안 계속장학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 3.5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장학수혜조건 미 충족 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하지 않는다. -장학수혜조건 미 충족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정지 (단, 수혜조건 미 충족 횟수 누적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수업료 전액 -기숙사 우선선발 및 기숙사비 일정금액 -어학연수(1회)	8학기 (단,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5년제 학과는 10학기)	학비감면 생활비
	CONTRIBUTION	① 국어,수학,영어,탐구(2개 과목 평균)중 3개 과목 등급 합 6이내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지급기간 동안 계속장학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 3.5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장학수혜조건 미 충족 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하지 않는다. -장학수혜조건 미 충족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정지 (단, 수혜조건 미 충족 횟수 누적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수업료 전액 -기숙사 우선선발 및 기숙사비 일정금액	4학기	학비감면 생활비
	HARMONY	① 국어,수학,영어,탐구(2개 과목 평균)중 3개 과목 등급 합 7이내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지급기간 동안 계속장학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 3.5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장학수혜조건 미 충족 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하지 않는다.	-수업료 전액	2학기	학비감면
	SRC	① 국어,수학,영어,탐구(2개 과목 평균)중 3개 과목 등급 합 8이내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지급기간 동안 계속장학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 3.5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장학수혜조건 미 충족 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하지 않는다.	-기숙사비 -일정금액	2학기	생활비
입학 성적 우수 장학	수시 모집	· 모집단위별 선발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의예과,간호학과 제외)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의예과, 간호학과) + 학생부교과(충남형지역인재전형, 충청형지역인재전형)(의예과, 간호학과) 모집인원 합산하여 선발 [의예과/간호학과 구분] -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 학생부종합(충남형지역인재전형, 충청형지역인재전형) + 학생부종합(지역인재-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전형) 모집인원 합산하여 선발 [의예과/간호학과 구분] -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 모집전형별 선발	최우수: 수업료 전액 우수: 수업료 70%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학생부교과(충청형지역인재전형)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학생부종합	1학기	학비감면

6-4-48-14 장학금 지급 규정

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기간	장학유형											
		<전형 전체 모집인원 기준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최초 합격자> -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 학생부교과(충청형지역인재전형)(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 학생부종합(사회통합전형)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자> -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전형)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업자 전형)		(사회통합전형)은 수업료전액													
	선발 인원	<table><tr><td>모집인원 5명~10명</td><td>: 최우수 1명, 우수 1명</td></tr><tr><td>모집인원 11명~20명</td><td>: 최우수 1명, 우수 2명</td></tr><tr><td>모집인원 21명~30명</td><td>: 최우수 2명, 우수 1명</td></tr><tr><td>모집인원 31명~40명</td><td>: 최우수 2명, 우수 2명</td></tr><tr><td>모집인원 41명~50명</td><td>: 최우수 2명, 우수 3명</td></tr><tr><td>모집인원 51명~60명</td><td>: 최우수 3명, 우수 2명</td></tr><tr><td>모집인원 61명~70명</td><td>: 최우수 3명, 우수 3명</td></tr><tr><td>모집인원 71명~80명</td><td>: 최우수 3명, 우수 4명</td></tr></table>	모집인원 5명~10명				: 최우수 1명, 우수 1명	모집인원 11명~20명	: 최우수 1명, 우수 2명	모집인원 21명~30명	: 최우수 2명, 우수 1명	모집인원 31명~40명	: 최우수 2명, 우수 2명	모집인원 41명~50명	: 최우수 2명, 우수 3명	모집인원 51명~60명	: 최우수 3명, 우수 2명
모집인원 5명~10명	: 최우수 1명, 우수 1명																
모집인원 11명~20명	: 최우수 1명, 우수 2명																
모집인원 21명~30명	: 최우수 2명, 우수 1명																
모집인원 31명~40명	: 최우수 2명, 우수 2명																
모집인원 41명~50명	: 최우수 2명, 우수 3명																
모집인원 51명~60명	: 최우수 3명, 우수 2명																
모집인원 61명~70명	: 최우수 3명, 우수 3명																
모집인원 71명~80명	: 최우수 3명, 우수 4명																
	정시 모집	·수능(일반학생전형),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모집단위별 선발 -최초 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선발인원		최우수: 수업료 전액 우 수: 수업료 70%	1학기	학비감면											
		전체 모집 단위	<table><tr><td>모집인원 5명~10명</td><td>: 최우수 1명, 우수 1명</td></tr><tr><td>모집인원 11명~20명</td><td>: 최우수 1명, 우수 2명</td></tr><tr><td>모집인원 21명~30명</td><td>: 최우수 2명, 우수 1명</td></tr><tr><td>모집인원 31명~40명</td><td>: 최우수 2명, 우수 2명</td></tr><tr><td>모집인원 41명~50명</td><td>: 최우수 2명, 우수 3명</td></tr><tr><td>모집인원 51명~60명</td><td>: 최우수 3명, 우수 2명</td></tr><tr><td>모집인원 61명~70명</td><td>: 최우수 3명, 우수 3명</td></tr><tr><td>모집인원 71명~80명</td><td>: 최우수 3명, 우수 4명</td></tr></table>				모집인원 5명~10명	: 최우수 1명, 우수 1명	모집인원 11명~20명	: 최우수 1명, 우수 2명	모집인원 21명~30명	: 최우수 2명, 우수 1명	모집인원 31명~40명	: 최우수 2명, 우수 2명	모집인원 41명~50명	: 최우수 2명, 우수 3명	모집인원 51명~60명
모집인원 5명~10명	: 최우수 1명, 우수 1명																
모집인원 11명~20명	: 최우수 1명, 우수 2명																
모집인원 21명~30명	: 최우수 2명, 우수 1명																
모집인원 31명~40명	: 최우수 2명, 우수 2명																
모집인원 41명~50명	: 최우수 2명, 우수 3명																
모집인원 51명~60명	: 최우수 3명, 우수 2명																
모집인원 61명~70명	: 최우수 3명, 우수 3명																
모집인원 71명~80명	: 최우수 3명, 우수 4명																
학생부교과(기회균형전형) 장학		·학생부교과(기회균형전형)에 합격한 자		-수업료 전액	1학기	학비감면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장학		①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에 합격한 자 ②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지급기간 동안 계속장학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 4.0이상(2026학년도까지는 3.5이상)취득하여야 한다. -장학수혜요건 미 충족 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하지 않는다. -장학수혜요건 미 충족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정지		-수업료 전액	8학기	학비감면											
체육특기자장학		필드하키, 테니스 종목 합격자		수업료 전액	8학기	학비감면											
서해5도학생장학		① 「서해5도 학생(교과)」 전형에 합격한 자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지급기간 동안 계속장학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학		-기숙사 우선선발 및 기숙사비 일정금액	8학기 (단,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생활비											

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기간	장학유형
		기 평점 평균 3.5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장학수혜요건 미 충족 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하지 않는다. -장학수혜요건 미 충족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정지		5년제 학과는 10학기)	
외국인학생장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류기관 추천자 중 성적우수자 ②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에 합격한 유치 중점국가 출신자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생활관비 전액	1학기	학비감면 생활비
		외국인 신·편입학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류기관 추천자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수업료 일정비율 -생활관비 전액	1학기	학비감면 생활비
		외국인 신·편입학 특별전형에 합격한 일반 외국인	-입학금 전액 -수업료 20% -생활관비 전액	1학기	학비감면 생활비
		외국인 신·편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중 공인 TOPIK(한국어능력시험) 2~6급 취득자	일정금액	1학기	생활비
특성화고졸 재직자장학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수업료 50%	8학기	학비감면
계약학과장학		본 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의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일반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	-입학금 전액 -수업료 30%	8학기	학비감면
		본 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의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일반 학습병행제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8학기	학비감면
편입학 성적우수 장학		- 일반편입학 - 모집단위별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모집단위별 최초합격자 수 5~10명: 장학생 2명 선발 ▶ 모집단위별 최초합격자 수 11~15명: 장학생 3명 선발 ▶ 모집단위별 최초합격자 수 16명 이상: 장학생 4명 선발	-수업료 전액	1학기	학비감면
충남형 계약학과 장학	충남 인재	①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전형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충남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로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급기간 동안 계속장학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액, 장학생선발 및 유지조건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일정금액	6학기	생활비
	학업 지원	①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전형 합격자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급기간동안 계속장학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 유지조건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수업료 30%	2학기	학비감면

6-4-48-16 장학금 지급 규정

[별표 2] 삭제 <2025.3.1.>

[종전 '별표2'에서 이동, '별표1'로 이동 <2025.3.1.>]